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80
- 나. 제안자: 이한동 의원 외 13인
- 다. 제안일자: 2023년 5월 23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5월 25일(목)

### 2. 제안사유

마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발주가격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역할(안 제3조, 제4조)
- 다.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안 제5조)

## 4. 관계법령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9조의2

## 5. 검토보고

- 동 조례 제정안은 2023년 5월 23일 이한동 의원이 제출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5천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시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발주가격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 안 제4조~5조에서는 구청장의 역할과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에 대해 규정함.
- 참고로, 동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동대문구, 구로구, 노원구 3곳임.

### ▶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자치구명	조례명	제정일
동대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2019. 2. 14.
구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2021. 4. 8.
노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2018. 11. 15.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동 제정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민과 관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구민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향후, 본 조례가 공포·시행될 경우 집행부의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발주부서 상호 간 긴밀한 업무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고용정책 기본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